

[산업간호와 법]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 제21호, '11. 3.16. 공포, 시행)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사유 등의 규정을 정비하고, 지정교육기관의 인력·시설 변경신고서의 처리기한을 명시하며, 자격·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작업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사유, 지정취소 시 청문 실시 및 수수료 납부 규정이 법률 및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정비함(안 제6조, 안 제6조의2 및 제13조 삭제).

나. 지정교육기관이 보유인력·시설이 변경한 경우에 제출한 인력·시설 변경신고서의 처리기한을 변경신고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로 명시함(안 제5조제5항).

다. 크레인 작업과 관련하여 최근 기술 발달로 해당 설비를 원격 조종하는 경우에도 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혼선이 있으므로, 작업의 범위를 조종석에서의 조종작업으로 명확하게 규정함